



#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알림

---

1. 관련: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17호)
2.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·도, 생산자 단체 및 유관 기관 등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·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,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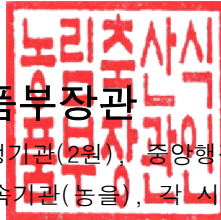
### ○ 주요 개정내용

- 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꿀을 포함하고, 꿀 등급판정 관련 방법·기준·절차 등을 규정(제38조제1항, 제45조제1항, 별표4·5, 별지 제37호의3 서식·제44호의3서식 등)
- 축산업 허가·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하는 교육은 허가·등록 신청 전 2년 이내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봄(제36조의2제1항)
- 축산업 허가·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가 받아야하는 보수교육의 기산일을 허가·등록한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함(별표 3의4)

○ 공포일 및 시행일: 2023. 12. 8.

붙임: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17호) 1부. 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산하기관(농병), 소속기관(농을), 각 시도, 농협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, 생산자단체

주무관 김자은 사무관 지민정 축산정책과장 정경석 전결 2023. 12. 8.

협조자

시행 축산정책과-5369 (2023. 12. 8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309호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92 팩스번호 044-868-9025 / [kje5799@korea.kr](mailto:kje5799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